##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05

발의연월일: 2020. 8. 5.

발 의 자:남인순·맹성규·임종성

강선우・박홍근・최혜영

아뉴진비) · 황운하 · 김경만

이성만 · 윤미향 · 김영호

안규백 · 송재호 의원

(14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 된 이후에도 가정방문,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,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러한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시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시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(안 제75조제3항제1호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조제3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3.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5조(과태료) ①・② (생 략)	제75조(과태료) ①・② (현행과
	같음)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③
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	
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
1. · 1의2. (생 략)	1.・1의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1의3.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
	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
	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
	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
	<u>는 자</u>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